

「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」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8. 9.

국토교통부장관

「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」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관련 갈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.

이에, 공사비 증액 및 검증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공사계약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때에 조합이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(안 제5조제1항)
- 나. 검증기관이 조합이나 시공사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검증 절차가 신속히 개시되도록 하고자 함.(안 제5조제3항)
- 다. 사업시행자등이 시공사의 증액 요청일부터 30일 내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검증절차가 신속히 개시되도록 개선하고자 함.(안 제5조제4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주택정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(정보마당 → 법령정보/입법예고)란을 참고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(☎ 044-201-339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성명(법인 혹은 단체명,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

나. 의견제출 서식(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)

개정(안)	수정(안)	사유

다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
- 팩스 : 044-201-5532